

충남

노동부 보령지청, 상습체불근절법 홍보 캠페인 실시

- '25.10.23.시행 상습체불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 등 현장 안착 홍보 -

김형철 기자 입력 2025.08.06 21:12 | 댓글 0

🔗 📌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홍보 캠페인 모습

[보령=세종충청뉴스]김형철 기자=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이점석)은 5일 보령 시에서 열린 '보령머드축제' 행사장에서 참여업체 관계자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상습체불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초로 2조원('24년)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상습적인 임금체불이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알리고 상습체불을 예방함으로써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정되어 2025.10.23.부터 시행된다.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사업주 명단을 제공하여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등에 활용토록 하며, 공공 입찰에도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이다.

앞서 보령지청은, 관내 시·군 전광판 등에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관내 기업인협의회, 소상공인협의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법준수 문화 확산과 개정 근로기준법 안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점석 지청장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보령지청도 현장 홍보, 설명회 개최 등으로 임금체불을 예방과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형철 기자

10073000@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노동부 보령지청, 상습체불근절법 홍보 캠페인 실시

✎ 이성필 기자 | ☎ 승인 2025.08.06 18:35

‘25.10.23.시행 상습체불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 등 현장 안착 홍보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이점석)은 5일 보령시에서 열린 ‘보령머드축제’ 행사장에서 참여업체 관계자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상습체불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초로 2조원(‘24년)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상습적인 임금체불이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알리고 상습체불을 예방함으로써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정되어 2025.10.23.부터 시행된다.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사업주 명단을 제공하여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등에 활용토록 하며, 공공 입찰에도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이다.

앞서 보령지청은, 관내 시·군 전광판 등에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관내 기업인협의회, 소상공인협의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법준수 문화 확산과 개정 근로기준법 안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점석 지청장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보령지청도 현장 홍보, 설명
회 개최 등으로 임금체불을 예방과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성필 기자 sip6318@hanmail.net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상습체불근절법 홍보 캠페인 실시

2025년 10월 23일 시행 ... 상습체불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 등 현장 안착 홍보

대전신문 ✉️ | 기사입력 2025/08/06 [16:23]



▲ 근로기준법 홍보 캠페인 장면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이점석)은 지난 5일 보령시에서 열린 '보령머드축제' 행사장에서 참여업체 관계자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상습체불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초로 2조 원(2024년)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상습적인 임금체불이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알리고 상습체불을 예방함으로써 노동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정되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사업주 명단을 제공해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등에 활용토록 하며, 공공 입찰에도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이다.

2025년 10월 23일 시행

근로기준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상습체불사업주는 신용·재제 등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상습체불사업주란?

직전 연도 1년간

-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 5회 이상 체불 &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 체불(퇴직금 포함)한 사업주를 말합니다.

어떠한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되나요?

신용제재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 단, 법에서 정한 소정기간까지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는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 직전 연도 1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인한 체불을 대상으로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경제적 제재 부과

* 법 시행 후 '25.10.23~12.31. 확인한 체불로 76년 1회 초과 결정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중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또다시 체불하면 반드시 처벌됩니다.

- 명단공개 기간(3년) 중 또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반의사불벌칙" 적용 제외).

법 시행(25.10.23.) 이후 명단공개가 결정된 사업주부터 적용

근로자는 법원에 체불임금의 3배 이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체불 하거나,
- 1년 동안 임금을 체불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 체불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법 시행(25.10.23.) 이후 체불사업주가 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

앞서 보령지청은, 관내 시·군 전광판 등에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관내 기업인협의회, 소상공인협의회 등 유관기

관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법 준수 문화 확산과 개정 근로기준법 안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점석 지청장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보령지청도 현장 홍보, 설명회 개최 등으로 임금체불 예방과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기사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5/08/06 [16:23] © 대전신문

노동부 보령지청, 상습체불근절법 홍보 캠페인 실시

✎ 이승호 기자 | ☎ 승인 2025.08.07 06:15

‘25.10.23.시행 상습체불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 등 현장 안착 홍보

2025년
10월 23일 시행 **근로기준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상습체불사업주는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상습체불사업주란?

직전 연도 1년간
①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② 5회 이상 체불 &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 체불(퇴직금 포함)한 사업주를 말합니다.

어떠한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되나요?

신용제재
* 금융거래시 대출 이자를 상환 등 불이익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단, 법에서 정한 소정기간까지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는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직전 연도 1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인한 체불을 대상으로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경제적 제재 부과
*법 시행 후 '25.10.23.~12.31. 확인한 체불로 '26년 1. 1. 최초로 결정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중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또다시 체불하면 반드시 처벌됩니다.

○ 명단공개 기간(3년) 중 또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법 시행(25.10.23.) 이후 명단공개가 결정된 사업주부터 적용

근로자는 법원에 체불임금의 3배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체불 하거나,
○ 1년 동안 임금을 체불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 체불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법 시행(25.10.23.) 이후 체불사업주가 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이점석)은 5일 보령시에서 열린 ‘보령머드축제’ 행사장에서 참여업체 관계자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상습체불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초로 2조원('24년)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상습적인 임금체불이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알리고 상습체불을 예방함으로써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정되어 2025.10.23.부터 시행된다.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사업주 명단을 제공하여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등에 활용토록 하며, 공공 입찰에도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이다.

앞서 보령지청은, 관내 시·군 전광판 등에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관내 기업인협의회, 소상공인협의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법준수 문화 확산과 개정 근로기준법 안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점석 지청장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보령지청도 현장 홍보, 설명회 개최 등으로 임금체불을 예방과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승호 기자 ceobgnews@naver.com

노동부 보령지청, 상습체불근절법 홍보 캠페인 실시

김형철 기자 | 승인 2025.08.07 09:28

- '25.10.23.시행 상습체불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 등 현장 안착 홍보 -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홍보 캠페인 모습

[잡포스트] 김형철 기자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이점석)은 5일 보령시에서 열린 '보령머드축제' 행사장에서 참여업체 관계자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상습체불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초로 2조원(‘24년)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상습적인 임금체불이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알리고 상습체불을 예방함으로써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정되어 2025.10.23.부터 시행된다.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사업주 명단을 제공하여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등에 활용토록 하며, 공공 입찰에도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이다.

앞서 보령지청은, 관내 시·군 전광판 등에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관내 기업인협의회, 소상공인협의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법준수 문화 확산과 개정 근로기준법 안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점석 지청장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보령지청도 현장 홍보, 설명회 개최 등으로 임금체불을 예방과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잡포스트(JOB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형철 기자

노동부 보령지청, 상습체불근절법 홍보 캠페인 실시

- ‘25.10.23.시행 상습체불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 등 현장 안착 홍보 -
2025.08.06 14:43 입력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이점석)은 5일 보령시에서 열린 ‘보령머드축제’ 행사장에서 참여업체 관계자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상습체불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초로 2조원('24년)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상습적인 임금체불이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알리고 상습체불을 예방함으로써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정되어 2025.10.23.부터 시행된다.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사업주 명단을 제공해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등에 활용토록 하며, 공공 입찰에도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이다.

앞서 보령지청은, 관내 시·군 전광판 등에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관내 기업인협의회, 소상공인협의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법준수 문화 확산과 개정 근로기준법 안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점석 지청장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보령지청도 현장 홍보, 설명회 개최 등으로 임금체불을 예방과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진선 기자 brsnews@naver.com

▶ 윤진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